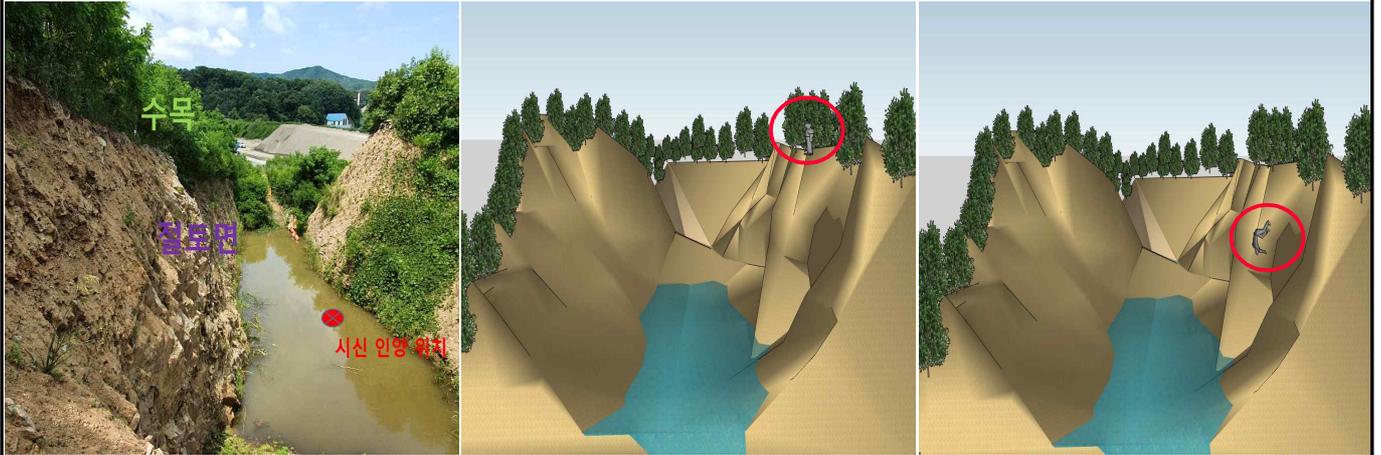


# 침사지 상태점검 중 단부에서 추락

## 재해 개요

2020.06.18. 14:00경 ○○○○개발(주) 소속 재해자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업장 내 침사지(연못형태)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하러 갔고 높이 약 3~7M의 침사지 절토면 상부 단부에서 사진 촬영 중 침사지 내로 떨어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됨.

## 현장사진



사고발생 침사지 전경

재해발생상황도

재해발생상황도

## 재해발생원인

- 침사지 절토면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 미흡**  
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- 개인보호구 미착용**  
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착용함.
-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**  
 사업주는 사업장 내 시설물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함.

## 재해예방대책

- 침사지 절토면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 실시**  
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,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90cm~120cm, 중간난간대의 높이는 45cm~60cm의 2단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
-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**  
 근로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
- 침사지 모니터링 작업 시 사전 위험성 평가 실시**  
 침사지 모니터링 작업 전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침사지 모니터링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교육
- 침사지 모니터링 지침 작성 실시**  
 침사지 모니터링 시 별도의 점검 장소 지정, 지정된 장소에 안전난간, 구명구 설치 등 시설적인 대책과 점검 전 개인보호구 착용여부확인, 2인 1조 작업,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관리적인 대책을 포함한 침사지 모니터링 지침을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